



심사보고서

의안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번호	제9호
심사일자	2026. 8. 28.



위원장 전 정 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9
------	---

2026년 8월 28일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14. 송파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18.

다. 상정일자: 2026. 8. 28. 제334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

2. 제안설명 요지 (김영옥 생활체육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권익위원회」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립체육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체육시설 이용 제한 사유 및 사용허가 취소·정지 기준을 정립하고,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제한하며, 그 처분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설)
-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 사용자의 홍보물 설치를 제한함(안 제13조제3항, 제4항 신설)

- 송파구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(안 제17조제2항, 제3항 신설)
- 송파구 체육시설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함
(안 제18조의2 신설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2)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의3, 제15조
 - 3)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(의안번호 제2019-483호)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분석평가), 기획예산과(규제사전심사)
- 기 타
 - 1) 개정문안, 신·구조문 대비표, 관계법령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첨
 - 2) 입법예고: 2026. 7. 22. ~ 8. 11. (20일간)
 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손지훈)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, 의안번호 제9호로 접수,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“국민생활 속 반칙·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방안”(2019.10.)의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립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,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○ 주요 개정사항

1.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·정지 기준 마련

- 안 제8조의2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를 신설하여 사용자가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,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, 현행 제8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제한 처분,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처분일로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2. 공공체육시설 관리·감독 강화

- 안 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제3항에서 체육시설 내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입간판,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, 같은 조 제4항에서 체육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승인을 받아 설치·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17조(감독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,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.
- 안 제18조의2(위탁참여의 제한)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18조(위탁의 취소)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수탁자의 경우, 1년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-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,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, 「지방자치법」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·제출된 안전임을 검토 보고드립니다.

4. 질의 및 답변(요지)

【질의】 박지효 위원

- 안 제17조의 활용실태 정기점검 관련 규정을 권익위원회 권고안과 달리 임의규정으로 한 사유는?
- 서울시 조례에서는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을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안 제13조제3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?

【답변】 김영옥 생활체육과장

- 관내 체육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임의규정으로 하고자 함. 또한,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임의규정으로 한 사례가 많음.
-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으로,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음.

【질의】 조용근 위원

- 관내 체육시설 수탁기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?

【답변】 김영옥 생활체육과장

- 송파구에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없음.

【질의】 전정 위원

- 권익위원회에서 개정 권고한 것이 2019년인데, 이렇게 늦게 개정을 추진한 사유는?

【답변】 김영옥 생활체육과장

-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우리구에서는 특정 동호회 등의 이용으로 인한 불만, 예약의 불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많았으므로, 우선 공공 예약시스템 개발부터 진행하여 2025년 12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예약

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음.

【질의】 이승희 위원

- 개정안에서 공공체육시설 외부에 현수막 등을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회원모집 등 필요한 내용을 부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어떠한지?
- 공공체육시설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취소를 받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향후 위탁에 관한 제한 등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인지?

【답변】 김영옥 생활체육과장

-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.
- 정말 중대한 위탁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받음.

5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가. 수정 이유

- 공공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,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부담 의무 및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수정 내용

- 안 제13조제3항 후단에 “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”를 신설함.

다.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~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내에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배너, 전단 등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④ <u>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.</u>	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내에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배너, 전단 등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</u> ④ <u>(개정안과 같음)</u>